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5월 28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김영희 의원 발의]

1. 제안이유

-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안심안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안심 안전사업의 지원방법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소재의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 안심호루라기, 경보기 등의 여성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사업의 지원방법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4조의2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1년 6월 3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8-510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5월 27일

발의의원 : 김영희 의원

찬성의원 : 장인수, 김명철, 이상복,
성길용, 이성혁 의원

□ 제안이유

-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안심안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안심 안전사업의 지원방법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소재의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 안심호루라기, 경보기 등의 여성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사업의 지원방법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4조의2).

□ 참고사항

- 「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
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여성 안심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)”을 “(여성 안심안전사업)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지원방법 및 대상) ① 시장은 제1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여성 안심용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호루라기

2. 경보기

3.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, 시 소재의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으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 안심용품의 지원범위, 방법,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여성 안심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4조(여성 안심안전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의2(지원방법 및 대상) ①</p> <p><u>시장은 제1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여성 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호루라기 2. 경보기 3.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<p>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, 시 소재의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으로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 안심용품의 지원범위, 방법,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
【별첨】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

제14조(여성 안심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) 시장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여성의 안심안전사업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
2.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